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0-04호

2020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공고

-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 생활문해교육강좌,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마을(신규·기존)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20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단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강원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평생교육강좌에 지원

❍ 소외계층과 마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문화확산

2. 사업기간

❍ 2020. 3월 ~ 10월

3. 공모개요 ※ 분야별 사업개요는 [참고] 확인

분야		신청대상	주요내용	지원규모
계				총109,000천원 (총 24개 기관)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	· 강원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강좌 운영 · 지역문화 계승 강좌	총6,000천원 (2개기관 내외)
	강원도 특성화 강좌	평생교육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관 중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 단체		총40,000천원 (8개기관 내외)
생활문해교육강좌		기초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단체	· 기초생활문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교육 운영	총10,000천원 (5개기관 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장애특성과 강원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강좌 운영	총4,000천원 (2개기관 내외)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마을대표조직	· 마을주민 역량강화와 마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총49,000천원 (7개기관 내외)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보조금의 5~10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분야별 필수 자부담 비율 다름

○ 지원항목 : 강사비와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 분야별 지원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기준과 단가는 [참고] 확인

○ 지원제외

- 최근 5년 동안(2015~2020) 공모사업 보조금을 반환한 경력이 있는 기관·단체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특정기관이나 단체, 정당의 이익사업 또는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동호회 활동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1.(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는 우편·방문접수

- (전자우편)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한글문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우편·방문)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마감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글문서(전자우편)와 원본(우편·방문)을 모두 제출
- 다만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은 전자문서(수신처 : 강원연구원)로 제출

○ 제출서류

공모분야	신청대상	제출서류
–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 (강원도 특성화 강좌) – 생활문해교육강좌 –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별 평생교육 기관·단체	– 공문과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관·단체 증명서류 각 1부 – 한글문서(전자우편)과 원본(우편·방문) 모두 제출
–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 (사군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 공문과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관·단체 증명서류 각 1부 – 전자문서로 제출(수신처 : 강원연구원)
–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마을대표조직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현황,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지원 확약서, 기관단체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이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수신처 : 강원연구원)

○ 제 출 처

- (전자문서) 수신처는 '강원연구원'으로 지정하여 발송 ※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만 해당
- (전자우편) idpeal@rig.re.kr ※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250-2955)
- (우편·방문)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5층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

6. 선정발표

○ 선정방법 : (1차) 적격여부 심사 → (2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강좌 관리계획, 예산산출의 타당성

○ 결과발표 : 3월 2째주 예정 /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에 게시, 개별 유선통보

○ 보조금교부 : 3월 4째주 예정 / 진흥원에서 기관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 전액입금

※ 다만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의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는 기관에서 진흥원에 강사비를 청구하면 **진흥원에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 입금**

○ 기타사항

- 선정된 기관은 담당자교육에 필수로 참석(3월 말 예정)

7. 유의사항

○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금액이 조정되어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안내 예정)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내년 사업 참여제한과 교부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합니다.

○ 사업별 문의처

-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생활문해교육강좌) 사업운영팀 정슬기, ☎ 250-2955
- (장애인 평생교육/강원도 평생학습마을) 사업운영팀 장민경, ☎ 250-2954

[참고] 분야별 지원개요와 운영요건

① 강원도 특성화 평생교육
- 강원도 특성화 강좌,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강좌 -

○ 지원분야 :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강좌와 강원도 특성화 강좌

○ 운영주체 :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강원도의 평생교육기관·단체

○ 운영대상 : 강원도 성인학습자 15인 이상

○ 주요내용과 지원금액

분야	신청대상	주요내용	지원규모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	· 강원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강좌 운영 · 지역문화 계승 강좌	총6,000천원 (2개기관 내외)
강원도 특성화 강좌	평생교육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관 중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 · 단체		총40,000천원 (8개기관 내외)

○ 지원내용 :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체험운영비 ※ 분야별로 지원내용이 다름

-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강사비*

  * 강사비 외 항목은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하며 <u>강사비는 기관에서 진흥원에 청구하면 진흥원에서 강사에게 직접 입금</u>

- (강원도 특성화 강좌)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체험운영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홍보비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용(현수막, 전단지 등)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체험운영비	야외 체험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 ※ 강의식의 집합교육만을 운영할 때에는 경우 식비, 다과비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u>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u> 필수(3,000천원 신청할 경우 300천원 자부담 편성)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동호회 활동과 1회성 강좌 지원불가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반영사항 반드시 명시
-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의 경우 일자리 연계계획 반드시 포함

② 생활문해교육강좌

○ 운영주체 : 문해교육강좌 운영기관·단체

○ 운영분야 : 기초생활문해강좌, 기초문해교육과 연계한 체험활동

○ 운영대상 : 기관의 문해학습자 10인 이상

-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초문해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

○ 주요내용

- (생활문해)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또는 금융 등 기초생활능력 향상강좌
- (체험활동) 역사 강좌 또는 유적지 탐방 등 기초문해교육 강좌와 연계한 체험활동
- 강좌 예시(안)

분 야	주요내용
대중교통과 교통안전	교통안전 표지판 읽기 또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이용법, 교통사고 예방법 등
스마트폰 활용하기	스마트폰의 이해 또는 문자보내기 강좌, 인터넷 접속하기 등
금융의 이해	금융거래의 이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우리지역 역사탐방	강원학강좌 또는 우리지역 역사 강좌, 문화재 탐방

○ 지원금액 : 총 10,000천원(강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체험운영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체험운영비	야외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 ※ 강의식의 집합교육만을 운영할 때에는 식비, 다과비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2,000천원 신청할 경우 200천원 자부담 편성)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체험활동분야는 체험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교육까지 반드시 포함**
- 시·군 또는 강원도교육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기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강좌이므로 **'홍보비'는 예산 편성 불가**

③ 장애인 평생교육

○ 운영주체 : 평생교육기관 또는 장애인 기관·단체

○ 운영분야 : 장애특성과 강원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강좌

○ 운영대상 : 기관의 장애인학습자 10인 이상

○ 주요내용

- (기초문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 (학력보완) 학력 미취득 장애인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 (직업능력)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 (문화예술) 장애인 여가선용,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유와 활용 교육
- (인문교양)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생활, 학문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 (시민참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개발하고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 강좌 예시(안)

분 야	예 시
기초문해	장애인 한글교육 또는 지역사회적응교실, 컴퓨터 문해교육 등
학력보완	장애인 대상 학력인정과정 또는 장애인 대상 평생대학 교육과정 등
직업능력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또는 네일아트 교육, 점역교정사 양성과정 등
문화예술	요가교실 또는 생활공예교실, 미술치료 등
인문교양	중도장애인 재활 교육과정 또는 예절교실, 지역문화탐방 등
시민참여	장애인권교육 또는 성희롱예방교육, 지역 나눔 활동 등

○ 지원금액 : 총 4,000천원(기관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비	야외 체험활동을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 ※ 강의식의 집합교육만을 운영할 때에는 식비, 다과비 지원 불가

○ 신청자격 :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①과 ②에서 하나만 충족

- **(공통요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 운영
- ①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② 장애인 기관·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기관·단체,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운영 기관·단체

※ 자치단체 소속기관(시군청,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등)은 신청 불가

– 다만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이나 장애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탁 추진할 경우 신청가능

○ 기타사항

- **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2,000천원 신청할 경우 200천원 자부담 편성)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시·군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일자리 연계 계획 반드시 포함

④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 운영주체 : 18개 시·군(기존 평생학습마을 및 신규 평생학습마을)

- (기존) 동해시 금곡마을, 삼척시 하맹방리, 정선군 아우라지마을, 인제군 진동2리·하남3리
- (신규) 공모하여 선정, 시·군별 1개 마을 신청 가능

○ 운영규모 : 7개 마을(기존 5개, 신규 2개)

○ 지원기간 :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되고 최대 3년 지원

- (기존) 2019년 1년차 지원, 2020년 2년차 지원(2021년 사업종료)
- (신규) 2020년 1년차 지원(2022년 사업종료)

※ 1년차 7,000천원 이내 / 2년차 7,000천원 이내 / 3년차 5,000천원 이내

※ 다만 해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기간 내에서 재지원 결정

※ 예산규모는 진흥원 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주요내용

분 야	예 시
마을조직 운영	각종 협의회,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자원조사	마을주민 평생학습 요구조사, 지역특화자원 조사
주민대상 평생학습과정	지역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마을활동가 양성 평생교육과정 마을공동체 소득연계 평생교육과정
마을홍보사업	마을축제, 전시회, 특산물 품평회 등

○ 지원자격 :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①과 ②에서 하나 충족

- **(공통요건)** 진흥원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시、군비 대응투자
- ① 마을 대표 조직(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 마을회 등)
- ② 마을 내 평생교육사업 추진 경험 또는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
  (마을 주민 모임 또는 마을 대표 조직과 협약 후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총 49,000천원(마을별 최대 7,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운영경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경비	강좌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지 제작 비용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비용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마을 행사 비용 야외 체험활동을 운영할 경우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용 **※ 야외 체험활동 외 식비, 다과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시・군 평생교육부서에서 지역 내 평생학습마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전자문서(수신 : 강원연구원) 제출

<사업신청서 신청·지원 절차>

평생학습마을		시・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평생학습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취합하여 진흥원 전자문서 제출 (수신:강원연구원)	⇒	사업계획서 심사하여 선정 통보 (진흥원 → 시・군)

○ 기타사항

- <u>보조금의 50퍼센트 이상 시・군 대응투자</u> 필수(7,000천원일 경우 3,500천원 이상 편성)
- <u>보조금의 5퍼센트 이상 마을자부담 편성</u> 필수(7,000천원 신청할 경우 350천원 이상 편성)
- 사업비는 진흥원에서 평생학습마을로 직접 교부
- 사업 중간점검과 최종평가하여 차년도 재지원 결정
- 진흥원 주관 착수협의회, 담당자회의, 박람회,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

[참고] 예산지원항목과 유의사항

▢ 예산지원항목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강사비	·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 · 강사비 단가는 하단의 지급기준 참조하여 책정 · 식비(20천원), 일비(20천원), 교통비(실비) 별도 책정 가능	· 초과시간이 30분이 상일 경우 초과 1시간으로 인정함
교재비	·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구입 비용 · 시판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30퍼센트까지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50퍼센트까지 가능 · 생활문해강좌는 국가문해교육센터 자료 적극 활용	· (예)학습자 20명일 때 시판교재:26권 가능 제본교재:30권 가능
홍보비	· 강좌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지 제작 비용 · 홍보비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물품에 반드시 '2020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음 명시	
재료비	· 강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운영비	· 강좌에 포함된 행사(실습, 체험학습 등)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 입장료, 식비, 다과비 지원 가능(그 외 지원 불가) · 단순강좌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및 다과비 지원 불가	· 매식비, 다과비 지원 조건은 세부사업별 지침 참고

▢ 강사수당 지급기준(강원도인재개발원 기준)

등 급	대 상	강사수당 (천원/시간)		상한액(천원)
		기본 (1시간)	초과	
특별 가급	○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급) ○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인간문화	400	300	
특별 나급	○ 대학교 조교수, 대학 부교수 이상, 예술인·종교인·언론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 산업훈련, 레크레이션 전문가(5년 이상 경력자) ○ 연구기관 연구위원(3년 이상 경력자) ○ 3급 이상 공무원	250	120	(1) 공무원 구분 / 1시간 / 2시간 이상 장관급 / 500 / 750 차관급 / 400 / 600 4급이상 / 300 / 450 5급이하 / 200 / 300 (2) 공기업, 출자기관 구분 / 1시간 / 2시간 이상 기관장 / 400 / 600 임원 / 300 / 450 직원 / 200 / 300
일반 가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6급 이하 중앙부처 공무원 ○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나·다 제외자	130	80	
일반 나급	○ 6급 이하 공무원 ○ 전산, 외국어, 취미·체육분야 외래강사	80	50	
일반 다급	○ 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전산보조강사	50	30	
별도 지급	○ 위 지급단가로는 특별교육 강좌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진흥원 사전 승인 필요*	1,000천원이내		
회의 수당	○ 일반위원회	100	50	
	○ 사이버위원회	70	30	

▢ 예산편성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로 지원항목이 다르니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 신청서 참고

-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
  - 집합강의를 운영하면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및 다과비 (다만 강좌운영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의 행사에 한하여 식비 편성 가능)
  - 학습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류비 등
  - 행사부대경비 : 단체복,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등

- **사업비 편성 제외 사항(보조금, 대응투자액 편성 불가)**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내부직원 강사료 : 수행기관의 내부직원(원장 포함)이 강사로 투입 될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단, 강사로만 이루어진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는 강사료 지급 허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운영경비

- **예산(보조금, 대응투자액)을 변경할 경우**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사전에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

구 분	예 시	
진흥원 사전승인 필요	① 새로운 단위사업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이상 변경 시	–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퍼센트) 이상 경우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운영비, 교재비, 홍보비, 강사비 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자체변경 가능 (진흥원과 구두협의 필요)	① 경미한 사업 내용 변경	– 학습자 수, 수업차시(시간)의 10퍼센트 이내 조정할 경우 – 교·강사 및 교육 장소 일부를 변경할 경우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 이내 변경 시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금액이 1,000천원 미만 일 경우
	③ 동일 항목 내 예산 변경	– 예산의 동일항목 총 금액이 변동되는 않을 경우 – 다만 예산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변동 될 때는 진흥원 승인 필요

  - 예산변경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가능

▢ 기타사항

- 공모사업 선정 기관은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집행은 기관(법인·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만 가능합니다.
- 이 밖에 예산지침은 공모사업 분야별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